

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(제15조의9 관련)

개설자	시설기준
1. 수산질병관리사	가. 진료실: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추는 것
	나. 처방실: 소독장비,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추는 것
	다.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, 수산질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수산생물관련단체	가. 진료실: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추는 것
	나. 처치실: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무영(無影)조명등, 소독장비 등의 기구와 장비를 갖추는 것. 다만,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.
	다. 조제실: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, 다른 장소와 구획될 것
	라. 임상병리검사실: 현미경, 세균배양기, 항온수조, 굴절계, 마이크로피펫, 교반기(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를 말한다), 전자저울, 수질측정기, 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, 다른 장소와 구획될 것
	마. 기동장비 및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갖추는 것
	바.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, 수산질병관리원의 건물 총면적은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제외한 면적이 60㎡ 이상이어야 하며, 진료실(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)의 면적은 20㎡ 이상일 것
비고: 제2호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	